

Client Alert

August 2017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Michael Nixon
Director of Economics (Transfer
Pricing)
+65 6434 2535
michael.nixon@bakermckenzie.com

Krystal Ng
Senior Associate
+603 2298 7937
krystal.ng@wongpartners.com

Syn Joe Ong
Associate
+603 2299 6518
synjoe.ong@wongpartners.com

Rhu Vern Ang
Tax Manager
+603 2299 6517
rhuvern.ang@wongpartners.com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말레이시아 이전가격의 최근 전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하 "BEPS") 프로젝트의 15 개 Action item 의 최종 성과물이 2015 년 후반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BEPS 의 아젠다와 최소한 4 가지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을 이행하는 BEPS 포용적 체계(Inclusive Framework)에 가입함으로써 준회원국이 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준회원국입니다.

과세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전가격의 최근 전개가 기업의 운영에 미칠 영향, 시사점, 준수점,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BEPS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의 입장

말레이시아는 OECD 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OECD 정책들을 주목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BEPS 를 채택해 온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BEPS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 (MCAA) 및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다자간 협정 (Convention)에 사인함으로써 세원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의무준수사항

국내 법령이 마련되고,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이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he Malaysian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12, 이하 "TP Guidelines 2012")을 업데이트 한 바, 다국적기업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의무준수사항들을 유념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준수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이하 "CbCR") 준비 및 제출 의무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도부터 시행된 국가별보고서 규칙(CbCR Rules)에 의하면,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CbCR)를 준비하여 말레이시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합니다.

국가별보고서 규칙(CbCR Rules)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다국적기업이 해당됩니다:

- (i) 계열사(constituent entities) 간 국제거래가 있는 다국적기업
- (ii) 말레이시아에 모회사가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직전 회계년도 그룹 연결매출 총액이 30억 링깃(RM3b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 (iii) 최종 지주회사가 말레이시아의 회사법(Companies Act 1965)을 근간으로 설립되었고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 (iv) 말레이시아의 회사법 혹은 기타 성문법 혹은 외국 사법권의 법을 근거로 설립 / 등록되어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계열사(constituent entities)를 보유한 다국적기업

국가별보고서(CbCR)와 관련된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i) 국가별보고서(CbCR)는 규정된 양식 혹은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마련할 온라인 양식에 따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나, OECD Action Item 13의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에서 제공된 템플릿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i) 관련된 다국적기업은 회계년도 종료일 이전 혹은 당일까지 국세청장(the Director General of the Inland Revenue, 이하 "DGIR")에게 서면으로 작성주체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한편, 작성주체 당사자가 아닌 경우, 말레이시아의 계열사는 회계년도 종료일 이전 혹은 당일까지 국세청장(DGIR)에게 작성주체, 작성주체의 과세납부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iii) 관련된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b)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준비 의무

국가별보고서(CbCR)를 작성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은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 또한 준비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IRB) 요청시 이전가격 서류와 같이 제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을 준비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의 계열사는 모기업이 작성한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의 사본을 이전가격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c) 업데이트 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P Guideline 2012)에 규정된 이전가격 서류 준비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세청(IRB)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TP Guideline 2012)을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발표했고, 가이드라인의 일부 챕터들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현 이전가격 서류를 검토하여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사점

국가별보고서(CbCR) 및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무 준수사항들을 볼 때,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세무준수, 밸류체인, 기업운영구조 및 이전가격 정책들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 내용과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은



다국적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사법권에서의 경제활동, 발생하는 소득의 글로벌 배정, 세금납부의 합산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국가별보고서(CbCR)는 이전가격 리스크(그리고, 잠재적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관련 리스크)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국가별보고서(CbCR)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보다 용이해진 정보의 교환으로 세무당국의 감사 및 이전가격 관련 분쟁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가 국가별보고서(CbCR)의 도입을 시행한 바, 다른 사법권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모기업의 계열사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국가별보고서(CbCR)의 작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당국도 다른 사법권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국가별보고서(CbCR)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정보는 세무당국의 감사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가격 플래닝과 문서로 잘 정비된 이전가격 정책을 갖추는 것은 세무당국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운영, 공급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갖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의 세무감사 및 이전가격감사의 적극성을 볼 때,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플래닝과 서류 준비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말레이시아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면 등 결과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이 시행되는 사법권입니다. 세무변호사와 주고받은 기업의 민감한 사안들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